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 6. 2 선고 2019가단22706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경
담당변호사 강진영

피 고 A(개명전 :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현
담당변호사 박효현
변 론 종 결 2021. 3. 17.
판 결 선 고 2021. 6. 2.

주 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2019. 6. 21. 체결된 71,011,91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1,011,9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14. 및 2018. 7. 3. 각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보증의뢰에 따라 소외 회사가 E은행 및 F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할 원리금상환 채무에 관하여 E은행 및 F은행에 관하여 보증을 하였으며, 그 보증내역은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C는 각 같은 날 원고에게 위 보증약정에 따른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원고의 보증에 기하여 E은행 및 F은행으로부터 각 대출을 받았으나 2019. 6. 25. 위 각 은행에 대한 대출이자의 지급을 연체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9. 10. 25. F은행에 대하여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345,692,437원을, 2019. 10. 31. E은행에 대하여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604,517,062원을 각 변제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소외 회사와 C를 상대로 이 법원 2019차전44750호로 위 대위 변제에 따른 구상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소외 회사와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952,490,099원 및 그 중 604,517,062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345,692,437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하였고, 2020. 2. 14.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라. 한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의 소유권자였던 C와 피고(C의 처)는 2019. 4. 24. G 외 1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다. C와 피고는 위 매매계약일부터 2019. 6. 21.까지 매매대금으로 합계 142,023,821원(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는데, 당시 C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대금 중 C의 지분에 해당하는 71,011,910원(= 142,023,821원 × 1/2)까지 포함하여 매매대금 전액을 피고의 은행계좌로 송금받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G 외 1인은 피고의 은행계좌로 이 사건 매매대금을 이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참조).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본다. 앞서 보았듯이 C와 피고 사이의 위 합의에 따라 피고는 실질적으로 2019. 6. 21.경 C로부터 이 사건 매매대금 중 C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원인 71,011,910원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받았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위 71,011,910원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C의 부탁에 따라 자신의 은행계좌에 위 금원을 일시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고, 이후 위 금원은 소외 회사의 채무변제에 모두 사용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위 인정사실 기재와 같이, ①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인 2019. 6. 21.보다 앞선 시점인 2014. 3. 14. 및 2018. 7. 3.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연대보증약정이 체결되었고, ②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9. 6. 25. 소외 회사가 위 각 은행에 대한 대출이자의 지급을 연체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며, ③ 원고가 2019. 10. 25. 및 2019. 10. 31. 위 각 은행에게 소외 회사의 대출채무를 대위변제하여 C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해당 여부

C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채무초과의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와 같이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C는 이로 인하여 일반 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와 C 사이에 2019. 6. 21. 체결된 71,011,910원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71,011,9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성광

별지 보증 및 대위변제 일람표

	순 위	1	2	3
	보증서 번호			
(가) 원고의 보증내용	보증일자	2014. 3. 14.		2018. 7. 3.
	보증금액	221,000,000원	510,000,000원	360,000,000원
	보증기한	2014. 9. 12. (연장2019. 9. 6)	2015. 3. 13. (연장2019. 9. 6)	2019. 7. 3. (연장2019. 9. 30)
	대출기관	은행		은행
(나) 대출내용	대출일자	2014. 3. 17.	2014. 3. 17.	2018. 7. 4.
	대출금액	260,000,000원	600,000,000원	400,000,000원
	변제기일	2019. 9. 6.	2019. 9. 6.	2019. 9. 30.
	대출과목	운전자급		
	미상환 원금	84,150,000원	510,000,000원	340,000,000원
(라) 대위 변제금	대위 변제일	2019. 10. 31.		2019. 10. 25
	대위변제원금	84,150,000원	510,000,000원	340,000,000원
	대위변제이자	885,534원	9,481,528원	5,692,437원
	합계	85,035,534원	519,481,528원	345,692,437원
	추가 보증료	248,990원	1,584,490원	447,120원
	연대보증인			

별지 부동산 목록

1. (1동의 건물의 표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동[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 15364.1㎡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건물내역: 철근콘크리트벽구조 164.32㎡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15364.1분의 23.3877

-소유자 공유자지분 2분지1 지분 전부-

-끝-